

VIII-2 노동

1. 노동조건

일본에서는 최저한 지켜야 할 노동조건을 노동기준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국내에서 일하는 한 국적, 신조,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차이를 부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취직할 때에는 고용주는 노동조건을 정확히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주는 노동자에 대하여 서류로 확실히 써서 남겨야 합니다.

- ①계약기간
- ②일을 하는 장소, 사업내용
- ③일의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잔업
- ④임금(급료)의 결정, 계산 및 지불방법
- ⑤임금(급료)의 마감 및 지불시기
- ⑥퇴직에 관한 사항과 해고(회사로부터 퇴직을 강요당하는것) 이유



기타 상여(보너스), 퇴직금 등을 지불하기로 되어있는 경우는 함께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노동자에 대해서는 「승급이 있는가, 없는가」, 「퇴직수당이 있는가 없는가」, 「상여(보너스)가 있는가, 없는가」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노동에 관한 기준

①노동관계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동기준법

ㄱ)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노동자가 사업으로 인해 부상이나 병을 입은 경우 요양을 위해 일을 쉬고있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퇴직시키면 안됩니다. 예외는 법률에 정해진 보상 등을 사용자가 행사할 경우입니다.

ㄴ)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노동자를 퇴직시키려고 하는 경우는 최저 30일전에 전해야 합니다.

ㄷ) 휴업수당

사용자의 사정으로 노동자에게 일을 쉬게 하는 경우는 그 기간중 그 사람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상의 수당의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ㄹ) 노동시간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하루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를 넘는 시간외 노동을 한 경우 할증임금이 지불됩니다.

②최저임금법

산업 혹은 업무의 종류, 지역에 응한 임금의 최저액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3. 노동기준감독서

노동기준법이 준수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노동기준감독서입니다. 노동조건이나 노동재해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귀하의 직장을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와 상담해주시시오.

(부록IX-4 86 페이지)

4. 노동재해

본인이 사업중 혹은 사업이 원인으로 병이나 부상을 입어 노동기준감독서에 인정받은 경우 본인의 회사·공장이 가입하고있는 보험(노동자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당신의 치료비나 휴업보상,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인의 직장을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로 문의해주시오.

5. 상담창구

노동조건 등의 트러블 등에 관한 상담을 영어 · 중국어 · 포르투갈어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오사카노동기준국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 (부록IX-2 71 페이지)

6. 고용보험

노동자가 실업했을 때 생활의 안정이나 취직활동을 위해 실업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는 본인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헬로워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고용할 때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